

동물경매장 영업자 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

* 「동물보호법」시행규칙 일부 개정 · 공포(17. 7. 3)

출처 : 농식품부 (2017.7.3)

농림축산식품부(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7월 3일 「동물보호법」시행규칙을 개정 · 공포한다.

-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‘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’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.

농식품부 관계자는 “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,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

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

- 반려동물 경매장*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 · 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한다.
-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변경하여,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 ·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,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제한을 개선한다.
-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(신고)번호, 영업소명, 주소,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하고,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기수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으나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.
- 또한, 영업의 종류별 시설 · 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, 휴 · 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,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*한다.

2

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

- 동물복지축산농장*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·포장육·우유·식용란 외에 그 가공품으로 확대한다.

*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'12년에 도입되어 '16년 기준 114개 농장이 인증

- 다만, 인증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운송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,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3

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

-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.
- 또한, 영업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혹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, 동물보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.

4

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처리절차 보완

-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·유기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인 경우 자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.
- 또한, 지자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실·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타인 등에 입양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도록 한다.
- 아울러,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기존에는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르도록 하였으나, 이 외에도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.

〈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('17.7.3 시행) 중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〉

구분	현 행	개 정
②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		
- 동물복지인증 표시 대상 확대(제33조제1항)	-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·포장육·우유류·식용란의 포장·용기	- 농장에서 생산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·용기